

## 영동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예고

영동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영동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1년 12월 17일  
영 동 군 의 회 의 장

## 다. 보내실 곳

- 주 소 :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 
영동군의회(조례심사특별위원회)
- 전 화 : 043)740-3033, FAX : (043)740-3039

### 1. 조 례 명 : 영동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

### 2. 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 '22. 1. 13. 시행)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,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목적(안 제1조)
-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(안 제2조~제3조)
- 책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### 4. 의견제출

-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**2021년 12월 24일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영동군의회규칙 제            호

□ 입법예고 대상 : 「영동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」

- 의견 제출자 성명(법인·단체명) :
- 의견 제출자 주소 :
-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:

조례안 내용	의견(찬·반 의견 및 사유)	비고

## 영동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영동군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,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정대리) 영동군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 및 보조기관의 결원, 출장, 기타사고(이하 “사고”라 한다)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.

1.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.
2.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(담당)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.

제3조(지정대리)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동군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서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,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.

제4조(책임)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